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게시일자 : 2015-10-30

## 서 울 행 정 법 원

2000. 12. 28. 판결선고	인
2000. 12. 28. 원본영수	

## 제 12 부

### 판 결

사 건 2000구29765 의료보험진료수가 및 약제비 산정기준 개정 고시처분 무

효 확인 등

원 고 A

피 고 보건복지부장관

변 론 종 결 2000. 12. 21.

### 주 문

-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 청 구 취 지

주위적으로, 피고가 2000. 9. 1. 한 의료보험진료수가 및 약제비 산정기준 개정(이하 '이 사건 개정기준'이라 한다) 고시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2000. 9. 1. 한 이 사건 개정기준 고시처분을 취소한다.

### 이 유

- 이 사건 개정기준이 고시된 경위



가. 1999. 2. 8. 법률 제5854호로 제정 · 공포되어 2000. 7. 1. 시행된 국민건강보험법은 직장의료보험조합과 공무원 · 교직원 · 지역의료보험조합을 통폐합하는 한편 부칙 제2조에서 종전의 의료보험법과 국민의료보험법을 폐지하였는데, 그 중 특히 요양급여비용의 산정기준에 관하여 종전의 의료보험법 및 국민의료보험법과는 그 결정방법을 달리 규정하였다. 즉 종전의 의료보험법 제35조 제1항 및 국민의료보험법 제39조는 요양급여에 관한 비용은 보건복지부장관(피고)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였던 반면, 국민건강보호법 제42조 제1항 내지 제3항은 요양급여비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보험공단'이라 한다)의 이사장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의약계를 대표하는 자와의 계약으로 정하되, 계약기간(1년) 만료일 전 3월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만일 계약이 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심의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금액을 요양급여비용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한편 국민건강보험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요양급여비용의 산정기준에 관하여 피고가 2000. 6. 26. 고시한 보건복지부고시 제2000-26호(의료보험진료수가 및 약제비 산정기준증개정)가 적용되고 있었는데, 2000. 7. 1. 국민건강보험법의 시행과 더불어 종전의 의료보험법 및 국민의료보험법이 폐지됨에 따라 위 고시가 효력을 상실하게 됨에도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공단의 이사장과 의약계 대표 사이에 새로이 요양급여비용의 산정기준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시간적으로 거의 불가능하여 결국 법적 공백상태가 발생할 우려가 대두되었다. 이에 국민건강보험법은 부칙 제11조에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의료보험법 및 국민의료보험법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요양급여비용의 산정기준은 이 법 시행일부터 6월까지는 이 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단의 이사장과 의약계를 대표하는 자와의 계약으로 정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의 경과규정을 마련하였다.

다. 피고는 국민건강보험법이 시행된 후인 2000. 9. 4. 보건복지부고시 제2000-51호로 종전의 위 2000. 6. 26.자 보건복지부고시를 개정하는 이 사건 개정기준(별지 1. 의료보험진료수가 및 약제비 산정기준 중개정)을 고시하였는바, 그 주된 내용은 위 2000. 6. 26.자 보건복지부고시에서 정한 요양급여비용의 산정기준을 상향조정하는 것이었다.

[증거] 다툼없는 사실, 갑2, 11, 을5, 변론의 전취지

## 2. 관계법령

별지 2.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 3. 원고의 주장

원고는 국민건강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소정의 직장가입자인바, 이 사건 개정기준의 고시로 말미암아 법 제41조 등에 따라 건강보험가입자(이하 ‘보험가입자’라 한다)가 요양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본인일부부담금이 인상됨으로써 법률상의 의무가 가중되는 구체적·직접적인 불이익을 입게 되었다.

그런데 법 부칙 제11조는 법문의 해석상 위 2000. 6. 26.자 보건복지부고시 제2000-26호를 2000. 7. 1.부터 6개월 동안 법 제42조 제1항 소정의 계약으로 간주한다는 것일 뿐, 나아가 법 시행일 이후에도 피고에게 종전의 의료보험법 등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의 산정기준을 정할 권한을 유지시키거나 종전의 산정기준을 개정할 권한을 부여한 것은 아님이 분명하므로, 결국 이 사건 개정기준은 피고가 아무런 법적 권한 없이 제정·고시한 것이다.

따라서 주워적으로는 이 사건 개정기준 고시처분의 무효확인을, 예비적으로는 그 취



소를 구한다.

#### 4. 이 사건 개정기준 고시의 행정처분성 여부에 관한 본안전 판단

##### 가. 요양급여비용 및 본인일부부담금과 관련한 법규정의 개관

법 제40조 소정의 요양기관은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하여 법 제39조 제1항이 정한 진찰·검사·약제의 지급·치료·입원 등의 요양급여를 행한 후 보험공단에게 그에 소요된 요양급여비용(이는 종전의 의료보험법 및 국민의료보험법에 의하면 피고의 고시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면 계약에 의하여 산정되는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을 청구하고, 보험공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를 거쳐 이를 요양기관에게 지급한다(법 제43조 제1항 내지 제3항).

한편 법 제41조는 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를 받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비용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2조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0조 [별표5]는 위와 같이 본인이 부담할 비용의 부담률 및 부담액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요양급여비용의 액수, 처방전 발급여부 등에 따라 경우를 나누어 일정액 또는 요양급여비용총액 중 일정 비율의 금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본인일부부담금은 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요양기관의 청구에 의하여 요양기관에게 지급하게 되는데(시행령 제22조 제1항), 다만 이미 납부한 본인일부부담금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를 통해 결정된 금액보다 과다한 경우에는 보험공단이 요양기관에 지급할 금액에서 그 과다하게 납부된 금액을 공제하여 직접 본인에게 지급·정산한다(법 제43조 제3항).

##### 나. 이 사건 개정기준 고시의 법적 성질



(1) 이 사건 개정기준 고시는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요양급여비용의 산정기준을 정한 것이어서 법규정립행위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할 것이므로, 그것이 동시에 별도의 집행행위 없이 특정인의 구체적인 권리의무 내지 법률상의 이익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가져오지 않는 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2) 그런데 위 관계법령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개정기준 고시는 일반적·추상적인 기준을 설정하여 장차 요양기관이 보험공단에 대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거나 보험가입자 내지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비용 중 일부의 부담금을 청구함에 있어 그 액수를 산정하는 준칙에 불과하므로, 보험공단·요양기관·보험가입자 3자간의 구체적인 권리의무관계 내지 법률관계는 위 준칙의 존재만으로는 바로 형성되지 아니하고 보험가입자의 요양기관 내원, 요양기관의 요양급여의 실시, 요양기관의 보험공단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청구, 요양기관의 보험가입자등에 대한 본인일부부담금의 청구 등과 같은 일련의 사실행위나 법률행위가 있을 때 비로소 그 사실행위나 법률행위에 위 준칙이 적용되어 형성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개정기준의 고시는 그 자체만으로는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 내지는 법률상의 이익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이 사건 개정기준 고시는 행정소송법에서 정하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서의 성질을 갖지 못한다 할 것이다.

## 5.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에 관한 소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게시일자 : 2015-10-30

2000. 12. 28.

재판장 판사 김영태 \_\_\_\_\_

판사 김성수 \_\_\_\_\_

판사 김민기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게시일자 : 2015-10-30

## 2. 관계법령

### 1. 구 의료보험법 (2000. 7. 1. 국민건강보험법의 시행으로 폐지되기 전의 것)

#### 제35조 【요양의 비용등】

- ① 요양급여 또는 분만급여에 관한 비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 2. 구 국민의료보험법 (2000. 7. 1. 국민건강보험법의 시행으로 폐지되기 전의 것)

#### 제39조 【준용규정】

제27조 내지 제29조의 보험급여의 기준과 보험급여비용의 산정기준에 대하여는 의료보험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 3. 국민건강보험법

#### 제39조 【요양급여】

- ①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요양급여를 실시한다.
1. 진찰·검사
  2.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3. 처치·수술 기타의 치료
  4. 예방·재활
  5. 입원
  6. 간호
  7. 이송

#### 제40조 (요양기관)

- ① 요양급여(간호 및 이송을 제외한다)는 다음 각호의 요양기관에서 행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공익 또는 국가시책상 요양기관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의료기관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의료기관 등은 요양기관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의료법에 의하여 개설된 의료기관



## 2. 약사법에 의하여 등록된 약국

### 3. 지역보건법에 의한 보건소·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 4.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설치된 보건진료소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요양급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설·장비·인력 및 진료과목 등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요양기관을 종합전문요양기관 또는 전문요양기관으로 인정할 수 있다.

## 제41조 【비용의 일부부담】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를 받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비용의 일부(이하 "본인일부부담금"이라 한다)를 본인이 부담한다.

## 제42조 【요양급여비용의 산정 등】

- ① 요양급여비용은 공단의 이사장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의약계를 대표하는 자와의 계약으로 정한다. 이 경우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그 계약은 공단과 각 요양기관간에 체결된 것으로 본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은 계약기간의 만료일 전 3월이내에 체결하여야 하며, 그 기한 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심의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금액을 요양급여비용으로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요양급여비용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으로 정한 요양급여비용으로 본다.

## 제43조 【요양급여비용의 청구와 지급 등】

- ① 요양기관은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공단에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는 이를 공단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청구로 본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의 청구를 하고자 하는 요양기관은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청구를 하여야 하며, 심사청구를 받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를 심사한 후 지체없이 그 내용을 공단 및 요양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의 내용을 통보받은 공단은 지체없이 그 내용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요양기관에게 지급한다. 이 경우 이미 납부한 본인일부부담금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된 금액보다 과다한 경우에는 요양기관에 지급할 금액에서 그 과다하게 납부된 금액을 공제하여 당해 가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게시일자 : 2015-10-30

## 부칙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의료보험법 및 국민의료보험법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 제11조 (요양급여비용의 적용례)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의료보험법 및 국민의료보험법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요양급여비용의 산정기준은 이 법 시행일부터 6월까지는 이 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단의 이사장과 의약계를 대표하는 자와의 계약으로 정한 것으로 본다.

## 4.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 제22조 【비용의 본인부담】

- ①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이 부담할 비용의 부담률 및 부담액은 별표 2와 같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본인부담액은 요양기관의 청구에 의하여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요양기관에 지불한다.

---- [별표 2] 생략

## 5.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 제10조 【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

영 별표 2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본인이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는 항목 및 부담률은 별표 5와 같다.

---- [별표 5] 생략. 끝.